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2. 28. 박정하의원 등 16인

나. 회부일자 : 2025. 3. 4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(2025.8.21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9.17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수정가결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(2025.9.18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박정하 의원)

스마트폰 보급의 확대,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,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.

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,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,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.

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,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·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18조의4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용규)

1.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4제4항 신설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	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

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<u>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이 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 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
--	--

다. 검토의견

-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18조의4 등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(이하 ‘사감위’)는 학교 내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·시행, 각 학교장은 학생 도박중독예방교육 시행 등을 수행하여야 함.

[학생 도박중독 등 예방교육 관련 현행 규정]

근거법	주요 내용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	○ <u>사감위</u> - <u>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</u> 과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<u>시책 수립·시행</u> (법 제18조의4)
교육기본법	○ <u>국가·지자체</u> - 학생·교직원의 <u>건강·복지 증진</u> 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·실시 (법 제27조제1항)
학교보건법	○ <u>학교장</u> -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, <u>도박 중독의 예방</u>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<u>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</u> (법 제9조) - <u>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·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</u> (교육청, 「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」)

학교안전법	○ <u>학교장</u>
	- 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참여자에게 <u>안전교육</u> (교통안전, 약물 등 보건위생 관리, 사이버중독예방, 재난대비안전, 폭력예방 등) 실시 및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결과 보고 (법 제8조제1항, 시행규칙 제2조제1항) - 약물·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연간 10차시 이상 등 학생 <u>안전교육</u> 시행 (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)」, [별표1] 학년 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)

- 그런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4년 수행한 도박중독예방교육은 총 학생 대비 교육 이수자가 39.1%¹⁾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도박중독예방교육의 경우 다른 유형의 예방교육과 달리 「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」, 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)」 등에서 최소 교육 차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²⁾ 교육 이수 현황이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.

○ 도박³⁾중독은 절도·폭력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

1) 2024년 총 학생(5,132,180명) 대비 도박중독예방교육 이수자는 2,005,533명

[참고자료1]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중독예방교육 사업

2) 약물·사이버중독 예방교육 등의 경우 안전 항목별 필요한 최소 교육 차시가 정해져 있음

<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>

(단위: 단위활동, 차시)

구분		생활안전	교통안전	폭력예방 및 신변보호	약물 및 사이버 중독	재난안전	직업안전	응급처치
교육 시간	유치원	13	10	8	10	6	2	2
	초등학교	12	11	8	10	6	2	2
	중학교	10	10	10	10	6	3	2
	고등학교	10	10	10	10	6	3	2
횟수	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3회 이상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2회 이상	학기당 1회 이상	학기당 1회 이상

(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)」, [별표1])

3) [참고자료2] 청소년 도박문제 및 치유·상담 현황, [참고자료3] 도박범죄 관련 규정

- 다만, 청소년의 경우 도박은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‘도박중독 예방교육’이 아닌 ‘도박예방교육’으로 수정 필요⁴⁾, 예방교육 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시간 명시 필요⁵⁾, 교육부 지침 등을 활용⁶⁾ 등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현행	개정안	문제부 수정안
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과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④ <신설>	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.	제18조의4(----- 도박예방교육 -----) ① ----- 도박예방교육 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도박예방교육 ----- -----

– 5 –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박정하)

청소년의 경우 도박은 그 자체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도박예방교육으로 수정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내용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※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:

1.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9.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청소년의 경우 도박은 그 자체로 범죄인바, 도박중독이 아닌 도박 자체를 예방해야 하므로 ‘도박중독예방교육’을 ‘도박예방교육’으로 수정함(안 제5조제1항제9호, 제18조의4).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제9호 중 “중독 예방”을 “예방”으로, “도박중독예방교육”을 “도박예방교육”으로 한다.

안 제18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도박중독예방교육과”를 각각 “도박예방교육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도박중독예방교육을”을 “도박예방교육을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. 1. ~ 8. (생략) 9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(이하 "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"이라 한다)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.·11. (생략) ② (생략)	제5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	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----- <u>예방</u> ----- ----- <u>도박예방교육</u> ----- ----- ----- 10.·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 중독예방교육과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	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제18조의4(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----- ----- <u>도박예방교육과</u> ----- ----- -----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9호 중 “중독 예방”을 “예방”으로, “도박중독예방교육”을 “도박예방교육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도박중독예방교육과”를 각각 “도박예방교육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. 1. ~ 8. (생략) 9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교육(이하 “ <u>청소년도박중독예방교육</u> ”이라 한다)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. · 11. (생략) ② (생략)	제5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 <u>예방</u> ----- <u>도박예방교육</u> ----- ----- 10. · 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4(청소년 <u>도박중독예방교육</u> 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위원회는 청소년 <u>도박중독예방교육</u> 과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·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8조의4(청소년 <u>도박예방교육</u> 과 학교교육의 연계) ① ----- ----- <u>도박예방교육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「 <u>초·중등교육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<u>청소년도박예방교육</u> 을 실시하여야 한다.